

12. 水道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환경부공고 제1997-65호 1997. 11. 20

주요 골 자

- 가. 자연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외래어종의 포획 및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㎡이상 신축 건축물과 2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·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.
- 다. 국립건설시험소의 수도용자재에 대한 인정고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수도협회에서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재를 수도용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도물을 직접 공급하는 건축물은 위생상조치를 하여야할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함.
- 마. 지방상수도에서 물공급이 곤란한 공공기관 또는 물 사용량이 1일 1천톤 이상인 공장 등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.
- 바.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설치원인자와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개 정 이 유

용수의 효율적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 (1997.8.28. 법률 제5,395)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금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의 낭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등을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임.

주택회보